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 명예회복
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동행명령권 신설 및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부마항쟁 보상법 개정안이 시행('20.6.9.),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동행명령 불응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규정

-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8조의2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, 2차 위반 시 750만원, 3차 이상 위반 시 1,000만원의 과태료 부과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,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(과태료의 부과 기준) 법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
은 별표 6과 같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6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 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이상 위반
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8조의2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36조 제1항	500	750	1,00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<u>제32조</u> (생 략)	<u>제32조(과태료의 부과 기준) 법제</u> <u>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</u> <u>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.</u> <u>제33조</u> (현행 제32조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259